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계약원가심사분야 특정감사 —

2026. 1.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 ♡♡♡♡♡♡♡ 조성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주) ◻◻◻과 ☆☆☆☆. ☆. ☆☆. 공사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제2절에 따르면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시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 조성사업’을 추진 중 아래 [표 2]와 같이 암발파 공법변경 및 수목이식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 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 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변경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표 2] 설계변경 현황 “생략”

2.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관리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 ♪♪♪♪♪♪♪♪ 조성사업’을 추진 하면서 ①임목폐기물 파쇄에 불필요한 운반비(5km)를 적용하여 10,205천 원, ②식재(가이식→이식)품 적용 시 재굴취품 20%를 감하지 않고 100%를 적용하여 9,825천 원, ③식재 녹화마대 감기 미시공에 따른 27,783천 원, ④침사지 톤마대 쌓기 물량 미정산 13,114천 원 등 총 공사비 60,927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하게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60,927,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는 AAA는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하천재해예방사업 외 1건” 을 추진하였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설계변경 심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 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제2절에 따르면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시·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 하천재해예방사업 외 1건을 추진 하면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 하천재해예방사업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하천재해예방사업” 을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누적 변경금액(E/S금액 제외)이 아래의 [표 2]와 같이 10% 이상 증가 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 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설계변경 계약 후 준공 하였다.

[표 2] 설계변경 내역 “생략”

나. ♣♣♣♣♣♣♣♣ 복원사업

또한 “♣♣♣♣♣♣♣♣ 복원사업” 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누적 변경금액(E/S금액 제외)이 아래의 설계변경 4회에서 10% 이상 증가 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 ☆☆. ☆☆.에 완료하였으나, 이후 아래의 [표 3]과 같이 사업 물량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 심사 없이 설계변경 계약 후 준공하였다.

[표 3] 원가심사 및 계약 현황(4회 변경) “생략”

그 결과, 계약금액 산정의 합리성과 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 저해되고, 그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설계변경 부적정 등 공사 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 별 시공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 ☁☁☁☁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자연형 여울 잡석부설및다짐 시공시 램머를 미사용하여 약 36,900천 원 ② 골재채집 물량을 과다 산정하여 약 7,500천 원 등 총 약 44,400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지 않고 준공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44,40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는 BBB, CCC는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과다하게 적용하여 36,038천 원 등 사업비 67,307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었음에도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없이 설계용역을 준공 처리하였고,

흙막이공사 중 되메우기 및 다짐의 경우 설계도서와 다른 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시공으로 3,611천 원, 톤마대 쌓기 및 혈기공사를 미시공하여 3,004천 원 등 사업비 6,615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물량과다 산정,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73,922천 원 (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92,356,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관련자 중 DDD는 **훈계** 처분하시고, EEE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